

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(제31조의2관련)

1.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

지급시기	지급액
11월	·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 : 봉급월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
	·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: 기본연봉액(고정급적연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은 연봉액)의 53퍼센트(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58퍼센트)의 12분의 1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

비 고 :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, 제23조, 제26조 내지 제28조, 제41조, 제43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.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

구분		산입방식
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		· 전년도 봉급액 × {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÷ (1+9.32/12)}
연 봉 제 적용대상 공 무 원	· 별표 12, 별표 13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	· 전년도 기본연봉액(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액) × 0.53 ×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
	· 별표 13 제2호가목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	· 전년도 기본연봉액 × 0.58 ×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